보도자료1 (요약본) 이 자료는 2024년 1월 23일(화)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 1. 23.

# 기획재정부

# 목 차

│.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Ⅱ. 주요 개정 내용2
1. 경제활력 제고 2
1) 투자·고용·소비 촉진 ······ 2
2) 기업경쟁력 제고 5
2. 민생경제 회복 8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8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0
3. 미래 대비 11
3. 미래 대비 11 1) 출산·양육 지원 11
1) 출산·양육 지원 ······· 11
1) 출산·양육 지원 ···································
1) 출산·양육 지원 ···································
1) 출산·양육 지원 ···································

# │.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 ◇ '23년 국회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1. 경제 활력 제고

-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 2. 민생 안정

- ▶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3. 미래 대비

-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

#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Ⅱ. 주요 개정 내용

# 1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소비 촉진

-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sup>\*</sup>
    -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수소) <sup>①</sup>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sup>②</sup>수소환원제철, <sup>③</sup>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 □ 신성장 · 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 \* (현행)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 추가
  -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분 야	세부 기술 (신 규)
에너지·환경 (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 별도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기술
첨단 소부장 (5개)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수공정 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기술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법률**(조특법§25의6) **개정내용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sup>●</sup>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sup>②</sup>추가공제 신설
  - \* ① (종전) 대 3% / 중견 7% / 중소 10% → (개정) 대 5% / 중견 10% / 중소 15% ②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견 10% / 중소 15% 공제율 추가 적용
  - ▶ 추가공제 세부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지표**<sup>\*</sup> 중 **4개 이상 충족**<sup>\*\*</sup> 시 **추가공제 적용** 
  - \*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 ②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 ♠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 ⑤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 1 요건을 충족하고 2, 3, 4, 5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특령·종부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sup>10</sup>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sup>20</sup>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 \* 1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기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4.1.10~25.12.31 등
    - ②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 < 양도세 중과제도 >

세 율(%)

# 구 분'21.6~'22.5'22.5~'24.5<br/>(한시배제)1주택기본세율<br/>(장특공제 적용)기본세율+20%p<br/>(장특공제 배제)기본세율<br/>(장특공제 적용)3주택이상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 < 종부세 중과제도 >

-	구 분	세 율(%)		
1	주택	05 27		
2	2주택	0.5~2.7		
3주택 <sup>이상</sup>	<sup>Æ</sup> 12억원 이하	0.!	5~1.0	
	<sup>-Æ</sup> 12억원 초과	2.0	0~5.0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로 1년 연장
  -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
  - \* (현 행) 관광호텔업 (개정안)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

#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 \* (프로판) 20→14원/kg, (부탄) 275→176.4원/kg

# 2) 기업경쟁력 제고

-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중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중령·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로 완화
- □ 해외건설지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적용대상 (조특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 법률(조특법§104의33) 개정내용 >
- ◇ 국내건설기업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대여금 채권잔액의 최대 100%) 특례 신설
  - → 해외건설자회사의 요건, 대여금등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 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 (대여금등 범위)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
- □ 해외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 (현행)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
-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 □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법인령)
  - \*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 □ <del>공공주택시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비교세) (종부령)</del>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 (10~25%)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조특령)

-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순자산시가×**120%**)}]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법인령)

- \*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 (능특령)

- 전공대학<sup>\*</sup>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sup>\*\*</sup>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조령)

-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
-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 완화\*
  - \* (현 행)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 90% (개정안)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이자까지 포함

# □ 러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 부담 해소(소특령·법인령)

-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
  - \* (현 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2 민생경제 회복

#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
  - \* (현 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개정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추가

#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
  - \* (현 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개정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추가

# □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연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 완화 (소특령)

- \*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 \* (현행)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 □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1일 5→8만원)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 시행사(SH, LH 등)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23.11.30.)에서 발표
  - \*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 - **< 법률**(소득법§12) **개정내용 >**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분리,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5,000만원으로 상향

#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조특령)

- \* (현행)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3,000만원으로 상향

# □ 부가기차에 영세욜 및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확대\*
  - \*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 (농·임업용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 3 미래 대비

# 1) 출산·양육 지원

#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 □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소특령·법인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sup>\*</sup>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소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개소령)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300만원 한도)
-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

#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고용보험법 시행령」,「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

#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 (현행)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여 전상· 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24년부터 매칭률 82 → 100%로 샹향) 혜택 부여
  - \*\*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특공제\* 요건 완화 (소특령)

-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
-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기준시가 9→12억원) **상향**

# 3) 지역균형 발전

# □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 (조특령, 상증령)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에서 발표
  - **< 법률**(조특법 §121의33 등) **개정내용 >** -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 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
  -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특구 내 <sup>①</sup>부동산·사용권, <sup>②</sup>부동산 개발사업, <sup>⑥</sup>사회기반시설사업, <sup>④</sup>입주기업의 채권·주식<sup>\*</sup>을 투자 대상 으로 규정,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
    - \* 중소·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 □ 제주투자진흉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 (현행)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개정안)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1) 납세자 권익 보호

#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 (국기령)

-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게도 **확대ㆍ허용** 
  -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범위 확대 (국장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sup>\*</sup>하여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 \*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185→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250만원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령)

- \*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

# □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기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소특령·법인령)

- \*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
-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23→"26년)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구 분		′19	′20~′21	′22~23	'24(안)	'25(안)	′26(안)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	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관세령)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법률(관세법 §246의2) 개정내용 >--

- ◇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 ▶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보상 대상)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 추가
- (보상액) 수리비 또는 손실자의 청구액(구매가격 한도)으로 설정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법인령)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감가상각비** 손금 인정('24.1.1. 이후 적용)
-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특 명확화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축산업·임업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 판매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화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령)

< **법률**(법인법§12) 개정내용 >

-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유상감자차익\*,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의 지분비율 증가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 \*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관세령)

-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을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
  - \*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

# □ 현금영수중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필요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125→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특령)

-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 **2개 업종**(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추가(199→201개 업종)

# Ⅲ. 추진 일정

#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1개

# □ 내국세(17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교육세법·인지세법·농어촌 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관세(4개)

○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2 추진 일정

- □ '24.1.25.(목) ~ 2.14.(수), 입법예고
- □ '24.2.27.(화), 국무회의
- □ '24.2월말, 공포